

의안번호	2203417
의 퇴 인	김정호 의원
회 답 일	2024. 9. 23.
추 계 번호	24A33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와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45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67억원(연평균 33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19조)	—	—	1,000	1,000	1,000	3,000	600
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안 제24조)	4,500	2,300	2,300	2,300	2,300	13,700	2,740
합 계	4,500	2,300	3,300	3,300	3,300	16,700	3,34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공공기관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추진한 조치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조치의 내용, 추진실적 평가 또는 실태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와 국민 등의 자발적 참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천에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2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와 국민 등의 자발적 참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제3항) 1. 가정용·상업용·산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0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4	안 제1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17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정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투자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세제 지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주기 연장 또는 면제 3. 자발적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 4. 친환경 기업 평가와 관련한 인센티브 및 기업 홍보 지원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재량규정
6	안 제19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라고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항)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주기별·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받은 에너지진단의 결과	재량규정
7	안 제22조(진단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24조(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활용 열에너지 정책 수립과 신산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체계(이하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라고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9	안 제2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0	안 제37조(자동차 등의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지소비효율 기준 등)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항)	
11	안 제70조(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히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공공기관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X	현재 수행 중인 사업으로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tr> <td></td><td>2022 결산</td><td>2023 예산</td><td>2024 예산</td></tr> <tr> <td>한국에너지공단지원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td><td>106</td><td>110</td><td>104</td></tr>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106	110	104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106	110	104												
2	안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	X	현재 수행 중인 사업으로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tr> <td></td><td>2022 결산</td><td>2023 예산</td><td>2024 예산</td></tr> <tr> <td>전력산업홍보(전기절약홍보)</td><td>487</td><td>710</td><td>—</td></tr> <tr> <td>전력효율향상(에너지캐시백)</td><td>—</td><td>2,560</td><td>—</td></tr>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전력산업홍보(전기절약홍보)	487	710	—	전력효율향상(에너지캐시백)	—	2,560	—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전력산업홍보(전기절약홍보)	487	710	—												
전력효율향상(에너지캐시백)	—	2,560	—												
3	안 제10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 계획)	X	현재 수행 중인 사업으로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tr> <td></td><td>2022 결산</td><td>2023 예산</td><td>2024 예산</td></tr> <tr> <td>한국에너지공단지원 (수요관리투자사업)</td><td>23</td><td>23</td><td>23</td></tr>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수요관리투자사업)	23	23	23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수요관리투자사업)	23	23	23												
4	안 제1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	X	현재 수행 중인 사업으로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tr> <td></td><td>2022 결산</td><td>2023 예산</td><td>2024 예산</td></tr> <tr> <td>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td><td>36,969</td><td>263,334</td><td>294,575</td></tr>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6,969	263,334	294,575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6,969	263,334	294,575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7조(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의 지원 등)	X	현재 수행 중인 사업으로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tr> <th></th><th>2022 결산</th><th>2023 예산</th><th>2024 예산</th></tr> <tr> <td>한국에너지공단지원 (자발적협약)</td><td>—</td><td>366</td><td>466</td></tr>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자발적협약)	—	366	466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자발적협약)	—	366	466												
6	안 제19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												
7	안 제22조(진단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X	현재 수행 중인 사업으로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tr> <th></th><th>2022 결산</th><th>2023 예산</th><th>2024 예산</th></tr> <tr> <td>에너지진단보조</td><td>7,922</td><td>14,860</td><td>—</td></tr> <tr> <td>한국에너지공단지원 (에너지진단보조)</td><td>—</td><td>—</td><td>8,000</td></tr>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에너지진단보조	7,922	14,860	—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에너지진단보조)	—	—	8,000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에너지진단보조	7,922	14,860	—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에너지진단보조)	—	—	8,000												
8	안 제24조(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	○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												
9	안 제2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X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이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10	안 제37조(자동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	X	현재 수행 중인 사업으로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tr> <th></th><th>2022 결산</th><th>2023 예산</th><th>2024 예산</th></tr> <tr> <td>한국에너지공단지원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td><td>65</td><td>71</td><td>71</td></tr>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	65	71	71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	65	71	71												
11	안 제70조(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X	현재 수행 중인 사업으로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tr> <th></th><th>2022 결산</th><th>2023 예산</th><th>2024 예산</th></tr> <tr> <td>한국에너지공단지원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td><td>218</td><td>218</td><td>218</td></tr>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218	218	218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218	218	218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다만, 안 제25조(목표에너지지원단위의 설정)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목표에너지지원단위의 설정 및 이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5항),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재정지출성 사업의 예산 편성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라고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2023.4.1. ~ 2026.12.31.),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별도의 플랫폼 운영 예산(“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연간 10억원 규모)
 - “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외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총사업비는 236억원 규모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은 170억원임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이후 매년 10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0억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19조)	—	—	1,000	1,000	1,000	3,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미활용 열에너지 정책 수립과 신산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체계(이하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라고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과 관련하여 폐열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고도화 등 신규 예산(“폐열 활용촉진 기반구축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폐열 활용 촉진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열정보 체계 구축(국가열지도 시스템 고도화, 미활용열 데이터 수집 확대, 미활용열 데이터 품질개선), 사업화 기반구축(시범사업 설계, 사업화 컨설팅), 확산 기반구축(제도개선 방안연구, 우수 사례 교육·홍보) 등임
 - 사업 시작연도에는 국가열지도 시스템 이전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550백만원)이 발생함
 - 시스템 고도화 이후에는 사업화 기반구축(850백만원)이나 확산 기반구축(800백만원) 등의 재정소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소요에 반영하지 않음

[표 4] 폐열 활용촉진 기반구축사업 개요(사업 시작연도)

(단위: 백만원)

구분	상세 내용		금액
열정보 체계 구축	국가열지도 시스템 고도화	· 국가열지도 시스템 이전 (지역난방공사→한국에너지공단)	550
		· 데이터 정비 등 시스템 고도화	450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프라 유지보수	120
		· 운영비	80
	미활용열 데이터 수집 확대	· 산업단지·데이터센터 폐열, 온배수 등	1,150
	미활용열 데이터 품질개선	· 열 데이터 가공 및 분석을 통한 품질개선	500
사업화 기반구축	시범사업 설계	· 열수요처-공급처 매칭 시범사업 설계지원	350
	사업화 컨설팅	· 열 재활용 사업화 컨설팅 제공	500
확산 기반구축	제도개선 방안연구	· 법제도 개선, 인센티브 신설 방안 연구	700
	우수사례 교육·홍보	·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 등 확산 지원	100
합 계			4,500

주: 음영 부분의 재정소요는 시스템 고도화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45억원, 2026년에 23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37억원으로 추계됨

- 시스템 고도화 이후에는 국가열지도 시스템 이전 관련 비용(550백만원), 사업화 기반구축(850백만원), 확산 기반구축(800백만원) 등의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도 재정소요는 23억원으로 추계됨

※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실제 재정소요는 관련 시스템 고도화 이후 사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 (안 제24조)	4,500	2,300	2,300	2,300	2,300	13,7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